

의안번호	2219695
의 퇴 인	이상희의원
회 답 일	2026.7.23.
추 계 번호	26D354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6조의2 (선거사무등에 대한 검증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법¹⁾」에 따른 검증요구를 받은 경우 선거·국민투표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위하여 선거관리검증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①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대한 공정성·형평성에 관한 사항, ②투표 및 개표 과정에 대한 적법성·적정성에 관한 사항, ③그 밖에 선거·국민투표 결과의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6조의2(선거사무등에 대한 검증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693호, 이상희의원 대표발의)」 제127조의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검증요구 등) ① 국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및 「국민투표법」에 따른 국민투표에 대한 선거인·투표인 참정권 행사, 투표·개표 적법성 또는 선거·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안을 특정하여 그 의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증 요구는 선거 또는 투표에 대한 개표가 종료된 후에 할 수 있다.
- ② 국회는 제1항에 따른 검증 요구를 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자료의 보전을 요구할 수 있다.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법」에 따른 검증요구를 받은 경우, 선거·국민투표 사무 수행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대한 공정성·형평성에 관한 사항, 투표 및 개표 과정에 대한 적법성·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위하여 선거관리검증조사위원회(이하 “검증조사위원회”라 함)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검증조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 개정안은 검증조사위원회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3명, 행정학계·변호사협회·언론인 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검증조사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보도록 함)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 개정안은 이상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19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데, 해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선거 또는 국민투표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증조사위원회를 선거 또는 국민투표 실시 이후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검증요구를 받은 경우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검증조사위원회 설치 여부와 설치 횟수 등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 또한, 개정안은 검증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검증조사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재정소요 추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상욱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상욱	02-6788-4673	flyhigh@assembly.go.kr